

서울거리에술창작센터 계약/회계업무 감사 결과

I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18. 2. 9.(금)~2. 23.(금)
- 감사대상: 냉난방시스템 구매 계약 및 회계처리 업무 전반
- 감사구분: 특별조사
- 감사인원: 재단 감사실장, 감사팀장 외 1명
- 추진근거: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
 - 감사원의 '감사요청사항 관련 의견서 요청'(1.23.)에 근거하여 감사원 민원에 대한 사실 진위여부를 재단이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함.
 - 감사원(민원조사단)의 재단 방문 및 의견서 검토(2.9.) 관련 감사원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단 감사팀이 조사를 추진함.

II 감사 결과

- 계약 및 회계 질서문란 행위
 - 재단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9조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고, 「회계규정」 제60조에 근거하여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 규정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서울거리에술창작센터는 2016년 7월 구매한 냉난방시스템과 관련하여 10월부터 휴게실 난방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후, 2017년 2월 난방 용량 설계의 계산 착오가 확인되자 계약절차를 생략하고 냉난방기 1대를 납품받아 시범운영하였으며, 가용 예산이 확보(2017.7월)된 이후인 2017년 12월 해당 제품을 주문·납품받고 구매한 것처럼 행정서류와 지출관련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법인카드 결제 처리하였음.
 - 감사 결과 난방 부족으로 인한 문제발생 및 조치 시점에서 차상위직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업무처리 절차를 공식적으로 모색하지 않은 부분, 적법한 계약·회계절차 없이 물품을 납품·설치한 후 직원에게 행정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서울거리에술창작센터

【주의 촉구】 앞으로 관련 규정과 지침에 근거하여 계약 및 회계 업무질서가 엄격히 준수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람.

III 감사결과 조치

■ 재심의 신청

- 신청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
- 신청기간: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사항: 감사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 감사결과 적출내용 해당 부서 통보

- 해당직원 주의 및 재발 방지교육 철저

■ 조치결과 제출

- 제출기간: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제출방법: 증빙서류 첨부하여 감사팀으로 공문제출

■ 감사결과 공개조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외의 공개)
 - 감사결과: 처분통보 후 30일 이내 감사결과 요약분 정보공개

■ 신분상 조치: 주의

- 재단 인사규정 제37조에 의거, 감사결과통보 및 주의장 발송예정

■ 행정상 조치: 주의 요구

■ 재정상 조치: 해당사항 없음

-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감사원)감사요청사항 관련 의견서 요청 1부. 끝.